

의안번호	2213317
의 퇴 인	김문수의원
회 답 일	2025.11.24.
추계번호	25C5441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전라남도 통합의과대학 설치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통합의과대학과 통합의과대학병원’을 설치·운영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3,458억 1,6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표 1]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5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합 계
설치위원회	33.6	2.8	2.8	2.8	2.8	2.8	2.8	2.8	2.8	2.8	58.8
의과대학 설립	-	8,921	88,940	92,217	-	-	-	-	-	-	190,078
의과대학 운영	-	-	-	-	11,845	14,044	16,380	16,027	18,607	21,276	98,179
부속병원 설립	-	2,336	23,319	31,845							57,500
계	34	11,260	112,262	124,065	11,848	14,047	16,383	16,030	18,610	21,278	345,816

- 주: 1) 실제 공사 기간과 신입생 입학 연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2) 건물 건립 비용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3) 의과대학 운영 비용의 경우 실제 교직원 채용형태와 채용규모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4) 부속병원 건립 비용은 국고지원을 25%만을 반영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5) 의과대학 기숙사가 건립·운영될 경우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설치)	○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는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의과대학(이하 “통합의과대학”)은 지역별 인구수, 지역 간 균형발전,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교사(校舍), 부속병원, 연구시설 등의 시설이 위치한 학교 부지를 조성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4조(설치위원회)	○ 통합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위원회(이하 “설치위원회”)를 둔(제1항) 1. 통합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 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의과대학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통합의과대학의 부지 조성 및 그 명칭 등에 관한 사항 4. 통합의과대학의 부속병원 설치 및 그 위치에 관한 사항 5. 통합의과대학의 부속병원과 기존 도내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통합의과대학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설치위원회는 위원장인 전라남도지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그 밖에 설치위원회의 구성·임기, 위촉·해촉 및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5조(입학정원)	○ 교육부장관은 통합의과대학의 총 입학정원을 2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의무규정
4	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의료인의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의과대학을 통한 의료인 양성 및 부속병원 설치 등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교류·협력의 촉진 및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8조 (예산지원의 특례)	○ 국가는 통합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내용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9조 (지원기금의 조성)	○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 제1항의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세액 공제 및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7	안 제10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국가는 통합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통합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제1항)	재량규정
		○ 제1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11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 국립목포대학교의 장 또는 국립순천대학교의 장은 통합의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9	안 제15조 (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우선 채용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음(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의무복무가 이루어진 기관에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16조 (공공의료과정에 대한 학비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1	안 제17조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 제16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휴학, 성적기준의 미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을 반환하여야 함(제1항) 1. 자퇴하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다른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한 사람 3.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	의무규정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 제1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설치) 안 제5조(입학정원) 안 제8조(예산지원의 특례)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안 제3조(설치위원회)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3	안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라남도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 등과 통합의과대학을 통한 의료인 양성 등에 있어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교류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해당 규정은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재정소요 추정이 곤란함

1) 강원대 1150만원, 경북대 900만원, 경상국립대 992만원, 부산대 1010만원, 전남대 626만원, 전북대 990만원, 제주대 1092만원, 충남대 963만원, 충북대 848만원, 서울대 1,008만원 (자료: 대학알리미 2025년 대학(의과대학, 의학과) 등록금)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9조 (지원기금의 조성)	×	○ 제정안은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 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통합의과대학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재정소요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기부금의 규모 및 이에 따른 세액공제의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5	안 제10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필요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소요가 변동될 가능성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무상 양여, 대부, 사용·수익될 국유재산 및 물품의 규모 및 가액 등을 예상하기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6	안 제11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	○ 제정안은 국립순천대학교의 장 또는 국립순천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정소요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 규모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7	안 제15조 (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원의 구체적 내용 및 규모, 수혜 인원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8	안 제16조 (공공의료과정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안 제17조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등)	×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대학별 입학금과 수업료간 차이가 있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인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될 학생’의 비율과 비용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 ※ 참고로 2025년 국립대(법인포함) 의과대학의 등록금은 최고액은 1,150만원임(자료: 대학알리미)¹⁾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①전라남도 통합의과대학 설치위원회의 운영, ②통합의과대학 설립과 운영, ③부속병원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전라남도 통합의과대학 설치위원회) 제정안의 위원회 운영비용으로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 수당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통합의과대학 설립) 제정안은 총 2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입학정원을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200명으로 가정
 - － 「고등교육법 시행령」 2)에 따라 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이므로 학생이 모두 충원될 경우의 총 정원은 1,200명으로 함
 - － 안 제8조에서 국가가 통합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국비로 통합의과대학이 설립되는 것으로 가정함
- (통합의과대학 운영) 통합의과대학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추계하며, 운영비용은 신입생이 입학하는 2030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통합의과대학병원 설립) 통합의과대학병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500병상으로 가정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3)에 따라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은 대학병원을 두어야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4)
 - －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한의학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 의학과·치 의학과 및 수 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운영한다.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4)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등에 따라 입학정원 모집정지(1차위반) 및 학과 폐지(2차위반) 등의 제재를 받게 됨

(2025)을 통해 학생의 임상실습을 위하여 의과대학이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유효 병상 수를 500병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의과대학에도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두는 것으로 가정

□ 통합의과대학과 통합의과대학병원 설립비용은 공사비, 부대경비(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및 기타투자비로 구성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부속병원 건립비용의 국고지원율은 25%로 가정함

- 건물의 설립부지는 제정안에 따라 통합의과대학이 설치될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토지매입비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 건물 공사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은 제외하고 추계
- 기타 투자비의 경우 의과대학은 집기비품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부속병원은 집기비품비와 함께 의료장비비 및 전산시스템구축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공사비와 기타 투자비는 교육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준용하며, 부대경비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건축부문 요율을 적용

□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명시하였으나, 제2조에서 통합의과대학의 설치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으로 함

- 2026년부터 설치위원회를 운영하고, 2027년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건물 설계 실시, 2028년부터 2029년까지 2년간 건물 신축을 완료한 후, 2030년부터 학생을 모집하여 의대 학사과정 운영이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
 - 의과대학이 6년 과정임을 고려하여 총 정원 1,200명이 모두 충원되는 2035년까지 추계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설치위원회(안 제4조)

- 통합의과대학 설치위원회 운영 비용은 위촉직 위원 수에 회의수당과 회의횟수를 곱하여 산출함
 - (위원 수) 제정안에서 정원을 전라남도지사를 포함한 15인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원수는 15인으로 하고, 이 중 수당을 받는 외부 위촉직 위원은 14명으로 가정
 - (회의 횟수) 통합의과대학 설립을 준비하는 2026년에 월 1회씩 개최하고, 2026년 이후로는 연 1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수당)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⁵⁾을 준용하여 20만원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2026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총 5,88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약 546만원)
 - 위촉직 위원 수(14명) × 회의수당(20만원) × 회의횟수(21회) = 5,880만원
 - 회의횟수의 경우 2026년 월 1회(총 12회), 2027~2035년 연 1회씩 10년간 총 2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통합의과대학 설치위원회 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합계	연평균
위원회 운영	33.6	2.8	2.8	2.8	2.8	2.8	2.8	2.8	2.8	2.8	58.8	5.88

주: 위촉직 위원은 총 14명, 수당 단가는 20만원으로 가정하고 회의 횟수는 2026년 월 1회, 2027~2035년 연 1회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한 것으로, 실제 위원 구성과 수당 단가 및 회의 개최 횟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나. 통합의과대학 설립

□ 의과대학 설치에 따른 재정소요는 공사비와 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투자비)로 구성

- **(의과대학 면적)**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기준면적⁶⁾과 의학계열 대학 위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캠퍼스 사례를 고려하여 1인당 교사면적을 산출하고 학생 수를 곱하여 추계
 - － 경상대학교 칠암캠퍼스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의 1인당 교사면적(기숙사 제외)의 평균인 44.5㎡를 준용⁷⁾하고, 입학 정원 200명에 해당하는 총 정원 1,200명을 곱하여 53,400㎡로 산출
- **(공사비)** 의과대학 면적에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의 유사사례를 준용한 면적 당 공사단가를 곱하여 산출
 - － 의학계열 대학교 최신 공사사례인 ‘한국폴리텍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 건립공사’⁸⁾ 단가 3,013,902원/㎡에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⁹⁾
- **(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경비는 공사비에 설계 효율, 건축감리 효율, 시설부대비 효율을 각각 곱하여 산출¹⁰⁾
 - － 각 효율은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제3종(복잡) 상급을 적용하며, 추계기간 중 효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 (설계비) 2027년에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계비 효율 5.27%를 적용
 - － (감리비 및 시설부대경비) 건축감리 대가효율 1.09%와 시설부대비 효율 0.23%를 적용하고 2개 연도(2028~2029년)에 걸쳐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
- **(기타 투자비)** 총면적(53,400㎡)에 면적 당 이공학계열 집기비품비 단가¹¹⁾를 곱

6)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3] 교사기준면적에 따르면 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은 14㎡이나,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해당 계열의 대학이 만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면적이므로 다른 의과대학 중심의 캠퍼스를 기준으로 1인당 교사면적을 산출함

7) 의학계열 대학 위주로 설치된 캠퍼스로 국립의과대학 중에는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경북대학교 제2캠퍼스(대구 중구), 경상대학교 칠암캠퍼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가 있으며, 사립의과대학 중에는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가톨릭대학교 성의캠퍼스, 고신대학교 송도캠퍼스,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가 있음. 도서관, 식당, 동물실험실 등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한 시설이 있어, 본 추계에서는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캠퍼스의 입학정원이 1,000명 이하인 경상대학교 칠암캠퍼스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의 1인당 교사면적(기숙사 제외)의 평균인 44.5㎡를 적용함

8)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에 따르면, 동 대학교 공사(2023.12. 발주)는 지하 1층, 지상 4층, 2,050㎡, 공사기간 425일, 총 공사비는 152억원이었음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2021~2025년(6월 기준)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 2.21% 적용

10) 건축비 1,000~2,000억원 사이 구간에서 공사비를 기준으로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설계비는 5.08%, 감리비는 1.05%, 시설부대비는 0.23%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하여 산출하며, 2029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의과대학 건축에 따른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1,900억원 7,800만원으로 추계

[표 3] 의과대학 건축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합계
공사비	-	87,812	87,812	175,623
부대경비	8,921	1,128	1,128	11,177
기타투자비	-	-	3,277	3,277
합 계	8,921	88,940	92,217	190,078

주: 1. 실제 공사 기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2. 2개 연도에 걸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 연도별 연부액 비율을 50%로 가정함
 3. 건물 건립 비용에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통합의과대학 운영

- 의과대학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 항목과 동일하게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및 기타 투자비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교직원 수) 「대학설립 운영·규정」 [별표 5]에 따라, 입학정원 200명(총 재학생 1,200명)일 때 의학교육과정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150명으로 가정¹²⁾
 - 일반직원과 조교 수는 2025년 교육부 확정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른 교원 대비 직원과 조교의 비율(봉급 지급 인원 기준) 37.2%, 18.1%를 각각 곱해 56명, 27명으로 가정¹³⁾
 - 교원·조교·직원 채용은 신입생이 발생하는 2030년에 학생정원 1,20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교직원의 50%(116명)를 확보한 후, 누적 재학생 수 증가에 연동하여 매년 23~24명씩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11) 집기비품비 단가는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른 이공학계열 집기비품비 단가(57,860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12) 「대학설립 운영 규정」 [별표 5] 교원산출기준(제6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의학계열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8명, 인문사회계열은 25명, 자연과학계열/예·체능계열/공학계열은 20명임

13) 교육부 확정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른 교원 대비 직원 인원 비율(봉급 지급 인원 기준)은 37.20%. 교원 대비 조교 인원 비율은 18.10%.

- (인건비) 산출한 교직원 수에 1인당 평균 인건비를 곱하여 산출하고 기관부담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사학연금¹⁴⁾)을 합함
 - 2025년 교육부 확정예산 상 평균 인건비 단가(대학교수, 대학조교, 직원)를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과 기관부담금 비율을 적용¹⁵⁾
 - (기본경비) 인건비에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곱하여 산출
 - 기본경비 비율은 2025년 교육부 확정예산에 따른 국립대학 인건비 지원 예산액 대비 기본경비 지원 예산액 비율(8.89%)을 적용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 2024년 기준 국립대 의과대학이 보유한 실험실습기자재의 평균액을 3년(2030년부터 2032년)에 걸쳐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¹⁶⁾
 - 국립거점 의과대학 9개교¹⁷⁾의 평균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액(85억원, 2024년 말 기준)을 적용
- 의과대학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는 2030년부터 2035년까지 6년간 총 981억 7,900만원으로 추계

[표 4] 의과대학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30~2035년

(단위: 명, 백만원)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합계
인 건 비	교직원 수	116	140	164	187	210	233	233
	(신규 채용 수)	(116)	(24)	(24)	(23)	(23)	(23)	
	금액	8,485	10,559	12,761	15,100	17,530	20,040	84,475
기본경비		526	652	786	927	1,077	1,236	5,203
자산 취득비		2,833	2,833	2,833	-	-	-	8,500
합계		11,845	14,044	16,380	16,027	18,607	21,276	98,179

- 주: 1. 교직원 수는 새로 설치되는 의과대학에 대하여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인 대학교수, 대학조교, 직원의 수로 2029년부터 모든 재학생이 채워지는 2034년까지 매년 재학생 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가정
2.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각종 수당 및 기관부담금 제외)는 교육부 예산안의 2025년 인건비 단가(대학교수, 대학조교, 직원)에 기관부담금(사학연금 국가부담금 포함)과 공무원 임금상승률 적용
3. 기본경비는 2025년 교육부 확정예산에 따른 국립대학 인건비 지원 예산액 대비 기본경비 지원 예산액 비율의 평균인 8.9% 적용하여 인건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4. 자산취득비는 국립거점 의과대학 9개교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액의 평균값인 85억원(2024년 말 기준)을 3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4)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15) 통합의과대학의 교직원은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16) 정부는 국립대학 보유 기자재 중 내구연한(10년)을 초과한 기자재에 대해서만 확충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한 이후는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가정

17)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의 의과대학 실험실습기자재 보유 금액의 평균을 적용함

-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5년까지 9년간 총 2,882억 5,700만원으로 추계

[표 5] 의과대학 신규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합계
설치비	8,921	88,940	92,217	-	-	-	-	-		190,078
운영비	-	-	-	11,845	14,044	16,380	16,027	18,607	21,276	98,179
합계	8,921	88,940	92,217	11,845	14,044	16,380	16,027	18,607	21,276	288,257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통합의과대학병원 설립

-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에 따른 재정소요는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공사비와 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투자비)로 구성하며, 총 사업비 산출 후 국고지원비율(25%)를 곱하여 추계
- (부속병원 규모)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과 기존 국립대병원의 최소 수준을 고려하여 500병상으로 가정
 - 부속병원 면적은 최근 유사사례인 시흥배곧 서울대병원(총 800병상)의 병상 1개당 연면적(129.98㎡)을 준용하여 500병상에 해당하는 64,990㎡으로 가정¹⁸⁾
 - (공사비) 부속병원 면적에 면적 당 공사단가를 곱하여 산출
 -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의 2021년 기준 면적당 공사단가(2,486,695원/㎡)에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¹⁹⁾를 적용하고, 총 병상 수(500병상)을 곱하여 산출
 - (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경비는 공사비에 설계 효율, 건축감리 효율, 시설부대비 효율을 각각 곱하여 산출²⁰⁾

18) 한국개발연구원,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 2021.4.을 참고함. 시흥배곧 서울대학교병원은 800병상 규모로, 총 연면적 103,982㎡에 지상 12층, 지하 2층으로 건설되며, 총 공사비는 1,039억 8,200만원임. 이에 따르면, 면적당 공사단가는 2,456,695원/㎡(2021년 기준)으로 산출됨

19)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2021~2025년(6월기준)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 2.21% 적용

20) 건축비 100~200억원 사이 구간에서 공사비를 기준으로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설계비는 5.50%, 감리비는 1.1%, 시설부대비는 0.23%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 각 요율은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제3종(복잡) 상급을 적용하며, 추계기간 중 요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설계비) 2027년에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계비 요율 5.07%를 적용
 - (감리비 및 시설부대경비) 건축감리 대가요율 1.05%와 시설부대비 요율 0.21%를 적용하고 2개 연도(2028~2029년)에 걸쳐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
 - (기타 설비비) 병상당 의료장비비, 집기비품비, 전산시스템 구축비 단가를 곱하여 산출
 -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의 2021년 기준 병상당 의료장비비(1억 1,160만원), 집기비품비(647만원)이며, 500병상 단위로 환산한 전산시스템 구축비(186억 2,500만원)을 준용하고,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²¹⁾을 적용
 - (국고지원율)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지원율은 25%로 하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학병원 국고 지원 지침」에 따르면 병원 신축 비용에 대한 기준 국고지원율은 25%(단, 개원 전 운영비는 100% 지원)
- 부속병원 설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575억원으로 추계

[표 6] 부속병원 설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합계
공사비	-	92,110	92,110	184,220
부대경비	9,345	1,166	1,166	11,678
기타설비비	-	-	34,104	34,104
합계(A)	9,345	93,276	127,380	230,002
국고지원금 (B=A×25%)	2,336	23,319	31,845	57,500

주: 1. 공사비 및 기타 설비비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사례를 준용
 2. 실제 공사 기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3. 2개 연도에 걸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 연도별 연부액 비율을 50%로 가정함
 4. 건물 건립 비용에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2021~2025년(6월기준)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 2.21% 적용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